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50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517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5082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정지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론종결 2021. 12. 7.

판결선고 2022. 1. 11.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은 86,372,1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372,196원 및 그 중 78,594,0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1.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세종시 E 공사현장, F에 있는 G 공사현장, H 상가주택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가설재를 임대한 자이고, 피고는 2014. 3. 20.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C은 2016. 4. 2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위 각 임대차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자로 F에 있는 G 공사현장, H 상가주택 공사현장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가설재 차임 59,338,224원(세종시 E 공사현장 관련 6,615,000원 + F에 있는 G 공사현장 24,816,343원 + H 상가주택 공사현장 27,906,8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와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차738호로 위 가설재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7. 2. 7. 소외 회사 및 C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소외 회사 및 C이 각 이의신청을 하여 위 독촉사건은 2017. 2. 17. 이 법원 2017가단4084호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2017. 12.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59,33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은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52,723,224원(F에 있는 G 공사현장 24,816,343원 + H 상가주택 공사현장 27,906,88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8. 2. 8. 확정되었다.

다. C은 2017. 4. 3.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16.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I조합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매매계약 후인 2017. 5. 2. 말소되었고, 한편 위 아파트의 시가는 2020. 12.경을 기준으로 2억 8,70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2018. 2. 8.에는 소외 회사의 도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의 이전 사실 등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 피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12. 17.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C이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C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시점 및 위 매매계약의 시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 소외 회사와 C의 관계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은 86,372,196원(앞서 본 판결상 원금 52,723,224원 + 위 원금에 대한 2017. 2. 8.부터

2017. 12.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75,043원 + 위 원금에 대한 2017. 12.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2. 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373,9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86,372,19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78,594,070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소외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 수주 실적이나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C도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또한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사정이나 C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여 차임을 부풀려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이 실제 변제할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며,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외 회사에 4억 7,3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대여하였고, 2016. 4. 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주식 20,500주를 C 등에게 20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게 되어 C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주식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이 위 대여금 및 주식대금 중 일부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인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 및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C에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②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C은 채무자로서 사해행위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당시 그 소송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는 C이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및 주식대금 중 일부를 갚지 못하여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C은 위 대여금 및 주식대금을 전혀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내용이 들어맞지도 않는 점, 피고와 C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나 그 양수도대금액의 산출 근거도 없고, 피고 주장의 대여금액과 계좌내역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원고의 지적에도,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액의 구체적인 내역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액은 피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서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84.8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서구 대 34087.5㎡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34087.5분의 50.3484

